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욱의원)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현재 법률 및 시행령 부칙에 분산되어 2024년말까지 한시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0%) :
안전분야 배분비율(개별소비세 담배분의 5%)을 ① 법률에 일괄 명시하
며, ②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상향(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2%)하고, ③
일몰기한을 폐지하며(안 제9조의4제1항 후단), ④ 소방분야 배분액 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를 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 단서).

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률명시·비율조정·일몰폐지

소방안전교부세의 규정 연혁을 살펴보면,

i) 2015년 1월 1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당시에는 그 재원이 개별소
비세 담배분의 20%였으며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하면 지방자치단
체장이 별도 배분 기준 없이 소방분야·안전분야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
음.

ii) 그러나 소방분야 장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201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632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특례가 신설되어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개별소비세 담배분의 1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하였음. 이후 동 특례는 2017년에 3년(2020년말까지), 2020년에 3년(2023년말까지), 2023년에 1년(2024년말까지)씩 각각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iii) 2017년 7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및 신설 소방청으로 분산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관리본부)에게 이관하되 소방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이 신설됨.

iv) 2020년 4월에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로 인상되고 인상분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5%를 소방 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9조의4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소방분야 : 안전분야의 배분비율이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0% : 5%인 현행 체계가 정립되었음.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의 적정성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주로 그 일몰기한 연장시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소방청을 포함하여 소방분야 배분비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후인 2017~2022년간 인력이 약 40% 증가(47,457명 → 65,935명)하여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인건비 제외) 배분액 예산 3,183억원 대비 각종 지출 소요는 연말까지 6,383억원으로 전망되어 3,0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안전 분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2024년 예산 9,254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2023년말 조성액 2조 6,056억원) 등의 대체 재원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소방분야 배분비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소방분야 또한 안전분야의 일환으로서 소방분야 : 안전분야 배분이 없어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소방안전뿐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안전 등 다른 안전분야 투자가 시급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구분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이에 17개 시·도 모두 현행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의 적정성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 여부에 대

해서는 이러한 찬성·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재 법률 및 시행령 부칙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 여부는 관련 부처간 이견이 존재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서 국회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가급적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개정 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소방공무원 수당에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 교부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교부액 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목적의 수당 지급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공무원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 외에 소방공무원 등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화재진화수당·위험근무수당 등이 있음.

이 중 화재진화수당은 소방청·소방기관·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화재진화·조사 또는 해상구조·구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방청·소방기관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지급되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방부문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두 수당은 각각 2001년·2016년 도입 또는 인상된 후 23년·8년째 동결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수당의 지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i) 부산광역시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없는 수당 인상은 다른 소방분야·안전분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ii) 인천광역시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